

200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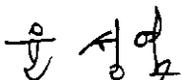
수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목 :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 <sup>안</sup> 발의

위 조례 안을 지방자치법 제 58조 및 제천시의회회의규칙 제 19조의 규정에 의거 제천시의회 제112회 제1차 정례회에 불임과 같이 발의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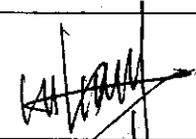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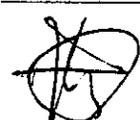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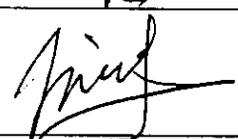
불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설치 조례 <sup>안</sup> 1 부

발의자 :  의원 (인)  
 의인  
 (찬성자서명 : 별첨)

선 결	의 장 <sup>수영호</sup>			장 인 (인)	부 인
접수일시	2005. 6. 13. 시	분	호	의 인	장 인
처리과	제천시의회	의 인	부 인	의 인	장 인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안의안발의 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홍성영		
이재환		
유경상		
이근호		
박종유		
김진규		
김보원		

##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 안

의안번호	10/2
------	------

발의년월일 : 2005. 6. .  
발 의 자 : 윤성열의원 외 6인

### 1. 제안이유

제천시의회 주요 의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 의정에 참여시킴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의정방향을 정립해 나가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의정평가단의 기능

- 주요의정에 대한 점검 및 평가
- 제천시의회에 관한 주민여론, 건의사항 등 제보
- 의정의 미래화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장 방청
- 기타 의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등

#### 나. 구성 및 임기

- 의정평가단은 제천시 관내 거주하는 자로서 50명 이내로 구성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 다. 위촉 및 해촉

- 시민 중 의정에 관심이 많으며 책임성이 있는 자로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의정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읍·면·동장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
- 의정평가단원 중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관외 전출 시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

#### 라. 회 의

-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1회, 특별회의는 의장이 필요시 개최

마. 평 가

- 평가대상은 제천시의회 의정을 대상으로 한다.
- 평가방법은 년 2회 상·하반기로 서면설문을 통하여 실시

바. 의견수렴

- 제천시의회에서는 인터넷·전화·서신·설문 등을 통하여 평가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

붙임 :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 1 부 끝

##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의회 의 주요의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천시의회 의정평가단(이하“의정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의정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의정에 대한 점검 및 평가
2. 제천시의회에 관한 주민여론, 건의사항 등 제보
3. 의정발전에 대한 아이디어 발굴
4.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장 방청
5. 기타 의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자문 등

제3조(구성 및 임기) ①의정평가단은 제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50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의정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위촉 및 해촉) ①제천 시민 중 의정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의정 전반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읍·면·동장 또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②의정평가단원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관외 진출시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 할 수 있다.

제5조(회의) 의정평가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특별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1회, 특별회의는 의장이 필요시 개최한다.

제6조(평가) ①평가대상은 제천시의회 의정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평가방법은 년2회 상·하반기 각1회씩 서면설문을 통하여 실시한다.

제7조(의견수렴) 제천시의회에서는 인터넷·전화·서신·설문 등을 통해 평가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제천시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한다.

제8조(표창) 의정평가단원 중 활동이 우수한 자 또는 제천시의회 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의정평가단원 중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특별히 차출되어 업무를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 의정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20세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3조의3제2항 내지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은 20세이상의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본다.

[본조신설 1999.8.31]

[시행일 2000.3.1 : 제13조의4]

제14조 (주민의 의무)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의무를 진다.

제3장 조례와 규칙

제15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6조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일법한계)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신설, 격의 변경시의 조례·규칙의 시행) 지방자치단체가 분할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격이 변경된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새로운 조례 또는 규칙이 제정·시행 될 때까지 종래 그 지역에 시행되던 조례 또는 규칙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등) ①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1994.3.16>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조례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조례가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조례와 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⑧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1편 의회 제천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사일정의 미료안건) 의장은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한다.

제 3 절 의안 및 동의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과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시장 또는 의원이 제1항에 의거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제출, 발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의안을 제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의안은 위원장이 제안자가 된다.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 ①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내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1조(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2조(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3조(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